

시청과 산하의 기관에도 현금, 수표, money orde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. 수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. 3월22일부터 다음해 6월21일까지는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된다. 그러나 수납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납 관공서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함(drop-off box)에 투입할 수 있다.

납세의무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정부가 자기의 구역에서 지정한 날짜에 인출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 인출허용 납부제(pre-authorized tax payment)를 실시하고 있다.

<매월 초일 자동인출(first day of the month bank withdrawals)>

12개월간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은행 구역에서 자동인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. 전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여 일단 분할납부하고 맨 마지막 달에 정산하게된다.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.

<매월 15일 자동인출(mid-month bank withdrawals)>

매월 초일 자동인출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, 인출일을 매월 15일로 하는 점이 다르다.

<2회 분할납부(two installment due dates)>

3월22일에 50%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해 6월21일에 자동 인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.

3.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

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.25%의 가산금(penalty)가 부과된다. 가산금은 복리로 계산되지 않으며, 기한의 제한없이 계속 매월 가산된다. 체납이 3년 이상 계속되면 과세권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.

4. 재산 평가

온타리오 주정부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온타리오 재산평가원(Ontario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: OPAC)을 설립하고, 1998년 12월 31일부터 평가업무를 이관하였다.

재산평가원의 website
http://www.opac.on.ca/html/pages/produ_serv/index.htm

재산평가원은 6월30일을 평가기준일(valuation date)로 하여 주내 전역에 걸친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평가된 자료는 오타와시를 비롯한 주내 각 기초단체의 재산세 세액산출의 자료로 활용된다.

재산평가원은 시장정보를 입수, 다음과 같이 재산을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다.

- 주거용 재산 : 매매가격으로 평가(the selling price a property)
- 사무실용 건물 : 임대수입(rental income)
- 산업용 건물 : 대체비용(the cost to replace a property)

주거용 재산에 대한 세액은 재산평가원이 산출한 평가액에 기초단체가 정하는 재